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. 12. 20 선고 2021가단1087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백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범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태

변 론 종 결 2022. 11. 22.

판 결 선 고 2022. 12. 20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8. 1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. 8. 18. 접수 제167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은 2018. 8. 22.경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으로부터 7,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, D은행은 그 원리금 납입을 지체하자 2020. 12. 7.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, 원고는 2020. 12. 9. D은행에 61,429,1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나. C은 2020. 8. 18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8,000만 원, 채무자 C으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,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, C은 2020. 4. 9.부터 국세체납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며(갑 제9호증의 2), 2020. 8.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(갑 제10호증)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등 그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,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또한,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,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4억 6,800만 원 상당인 반면, 소극재산은 D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10억 2,600만 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(피고는 C의 적극 및 소극재산 내역이나 가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),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C으로부터 꽃게를 공급받기로 하고 선수금으로 2018. 8.경 8,000만 원, 2019. 8.경 4,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, 그 중 68,572,500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의라고 인정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차진석